

제 7 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

제7.1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6조, GATT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(이하에서 “반덤핑협정”)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.
2.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 조치,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 조치는 이 협정 제19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